

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방역 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 - 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불임
 - 나. 적용지역 : 여수시 전 지역
 - 다. 처분기간 : '21. 5. 4.(화) 0시 ~ 5. 9.(일) 24시까지
 - 라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
 - 마. 처분사유 :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
 - 바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 - 사.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 및 제4항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(300만 원 이하)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(10만 원 이하)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5월 3일

